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550호 2020. 10. 21(수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-----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
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-176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3-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0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3-2블록 공동주택 신축
2. 사업주체 : (주)제이에스글로벌 (대표자 정현욱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3-2블록
 - 나. 대지면적 : 65,934㎡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203,021.3349㎡ (지하2층, 지상25층)
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10개동 1,172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마. 사 업 비 : 541,611,703천원
4. 사업기간 : 2020. 11. 30. ~ 2023. 8. 31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- 1590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우리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(안 제3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(안 제4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(안 제5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원(안 제6조)
- 골목형상점가 취소(안 제7조)
- 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17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전화 560-4431, 팩스 560-2730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3. “점포”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)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.

제4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)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2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
제5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골목형상점가 지원)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
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
3.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
4. 상권컨설팅 및 홍보
5.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7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
2.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2.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2. 소비자·경제 관련 활동가
3. 유통산업·마케팅·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
4. 도시계획·도시개발·건축·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6.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
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16조(회의록 작성 등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,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.

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'20.10.20~'20.11.9. ○ 내 용 - 의견수렴	-	-	-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'20.10.20~'20.11.9.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-	-	-